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9. 6 선고 2022가단7297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일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

담당 변호사 송일균

변 론 종 결 2023. 8. 23.

판 결 선 고 2023. 9. 6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8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5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
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청구금액은 1,800만 원임)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에 3,6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, 피고 C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,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갑 제1호증(융자신청서), 제2호증(차용증), 제4호증의 1(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)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. 그러나 한편,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C가 위 각 증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, 피고 C의 모 E이 F 실장이라는 원고 측의 사람에게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, 원고 측이 이를 이용하여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4호증의 1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그런데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E이나 원고 측이 피고 C로부터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4호증의 1을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. 따라서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4호증의 1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.

2)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).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본인 및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.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다.

3) 위와 같이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, 피고 C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 청구원인

1. 사건의 경위

원고는 2017.경 주채무자였던 소외 D 주식회사에 3,6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,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회사의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(갑제1호증 용자신청서, 갑제2호증 차용증).

2. 소외 D 주식회사의 대여금 채무불이행

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책임

위에서 말씀드린바 있듯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,6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,600만 원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